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영옥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영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3
----------	-----

발의연월일 : 2024년 2월 1일

발 의 자 : 강수진, 고영옥, 권영애, 김육영,
소형준, 오중균, 이용진, 이인순,
정병기,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시행 2024. 1. 1) 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고,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
(안 제4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변경(안 제7조)

라. 제6조,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경
제사회 전환 촉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4. 2. 2. ~ 2024. 2.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의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범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4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자원순환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촉진에 참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활용촉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10명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회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